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205-10

교육부

민원 질의 · 회신 사례집

2018. 12.



교육부

一 일 | 리 | 두 | 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C/ont/ent/s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정정	3
2.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4
3.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5
4.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대책	6
5. 유치원 준교사 자격 시험검정	6
6. 유치원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7
7. 유치원 공공성 강화	8

특수교육

8.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기준	9
9.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10
10. 특수학교 신·증설	10
11. 초등학교 취학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 재교육	11

II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교수요목기, 제1·2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	15
2. 2015개정 교과	15
3. 초등국정도서(지도서) 파일 인터넷 공유 여부	16
4.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률	17
5. 1983~1985년 발행된 교과서 및 표준전과	17
6. 휴업일 명칭 등	18
7.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대회참가 사실 기재	19
8. 예술고등학교 나이스 내신등록 3과 분리산출 이유	19
9.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	20
10.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따른 학교 성적 산출방식	21
11.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	22
12. SW특기자전형 공교육정상화법 저촉 여부	23
13.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입력 주체	24
14.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24

15. 고교 심화반 운영	25
16. 체조교육 활성화	26
17.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부 방침	27
18.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	27
19. 귀국예정학생 국내학교 편입	28
20. 귀국학생의 학력인정	30
21.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수정방법	31
22. 검정고시 응시 자격	32
23. 2018년 초등 코딩 의무교육	33

학교생활

24.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석	34
25.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35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36
27. 학교폭력 재심청구	37

학생건강

28. 학교급식 정보 확인 방법	38
29. 학교설립 예정지 지정	39
30. 초등학교 라돈 관리 처분기준	40
32.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	41
33.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기록 제출	42

34. 학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감염병의 종류	43
35. 학교 환기설비 설치 요구	44
36.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45
37.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46
38. 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	47
39. 기타유원시설에 설치 된 안전성검사 제외 유기시설(게임물) 설치 시 보호구역 심의대상 여부	47

학교제도

40.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	48
41. 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	49
42.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	49
43. 졸업 후 학생 신분	50
44. 초등학교 재취학	51
45.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51
4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	52
47. 학교 설립 요청	53
48.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	54
49.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55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	56
51.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	57
52. 전학 대상자 요건	58
53. 초등학생 조기진급	59

교원정책

54.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	60
55.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	61
56. 교원의 저작권 수입	62
57. 교원의 연수휴직	63
58.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64
59. 임용고시 결격사유	65
60.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65
61.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	66
62.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67
63.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	68
64.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68
65.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	69
66.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70
67.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71
68. 자녀돌봄휴가	71
69. 여성보건휴가 사용	72
70. 교육공무원 초과근무	73
71.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	74
72.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	74
73. 사립학교 교장 임기	75
7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76
75.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77
76. 교원의 휴·복직	77

77.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78
78. 동반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	79
79.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79
80.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80
81.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81
82. 기간제교원 결격사유	81
83.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82

교원 자격 · 복지

84. 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	83
85.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 및 자격증 취득	83
86.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	84
87.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85
88.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86
89.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	86
90.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	87
91.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	88
92.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88
93.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89
94. 교직과정 이수대상 선정 전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	90
95.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91
96.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절차 및 방법	91
97. 교직이수 가능 학과	92
98.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93

99.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	94
100. 장애를 가진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합격자에 대한 건의사항	95
101. 교사 자격 확인	96
10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97
103. 사서교사 자격 취득	98
10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	99
105.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	100
106. 수석교사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 가능 여부	100
107. 육아휴직 인정기간 및 호봉 재획정 관련	101
108. 예산부족 시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102
109.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103

Ⅲ 고등교육

❖ 학사·제도

1. 등록금 반환 기준	107
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08
3.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및 수혜횟수	109
4. 국가장학금 재학생 구제신청 예외처리	110
5.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110
6. 약대 학제개편 적용시기	111
7.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112
8.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	113

9. 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	113
10.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	114
11.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지원	115
12. 다자녀장학금	115
13. 대학의 수업 중 견학·실습·현장실습·이동수업	116
14. 편입학 모집 자격	118
15.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18
16.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119
17. 폐교대학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120
18.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120
19. 대학 간 이중학적 가능 여부	121
20.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시 기존 동일 학과 명칭 사용	122
21. 계약학과 편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	123
2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24
23. 계약학과 학위취득	125
24.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	125
25.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127
26.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산학협력단에 전출 가능 여부	128
27.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128

인사·복무

28. 대학 교원 휴직	129
29.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129
30.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130
31. 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131
3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132
33. 조교 교육공무원 분류 사유	133
34. 휴직 교원 재임용	134
35. 대학 교원 파견	135
36. 대학교병원 임상교원의 겸직	136
37.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137
38. 교육공무원 연가저축 적용 대상 여부	138
39.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139
40.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의 학과 수업 가능 여부	140
41. 고용휴직 중에 시간강사 위촉 가능여부	141
42.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141
43. 사립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절차	142
44.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가능 여부	143

대입제도

45. 수능 원서 온라인 접수	144
46. 2021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144
47.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145

48. 대입 원서 접수 내역 수정 및 입학전형료 환불	146
49. 실기·논술 고사 일정의 중복	147
50. 수시 합격시 정시지원불가	147
51.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진학 방안	148
52. 대학 합격과 등록포기 문의	149
53. 자기소개서	150

IV 교육안전정보

▣ 학생안전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용 차량 내 이동감지 센서 부착	153
2. 미세먼지 재난인정 법안처리	154
3. 학교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155
4. 이동 수단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 강화 요청	156

▣ 교육정보

5.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157
6. NEIS 영문 증명서 발급 건의	158
7. NEIS 기본학적 주소란 인권 침해 문제점 개선 요청	159

● 교육시설

8.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	160
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	160
1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61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각종학교 건축허가 가능 여부	162
12.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162
13. 학교 부지 내 어린이집 축조 가능 여부	163
14.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164
15.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165
16.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166

V 평생교육

● 평생교육

1.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169
2. 학원 등의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관리 가능 여부	170
3.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171
4. 「학원법」 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172
5.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173
6. 「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173
7. 「학원법」 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	174
8.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175

- 9.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 176
- 10.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176
- 11. 영어교습소 명칭 177
- 12.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177
- 13.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178
- 14.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179
- 15.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180
- 16.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181

직업교육

- 17. 특성화고 취업시기 182
- 18. 현장실습 표준협약체결서 문구 수정 건의 183
- 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184

VI 기타

- 1. 외국인학교 근거법령 187
- 2.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187
- 3.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고료 188
- 4.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8
- 5.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189
- 6. 분교 및 캠퍼스 설립 절차 등 189

7. 학교법인 분리후 신규 학교법인 신설	190
8. 전국 사립학교 현황자료 요청	191
9. EPIK 우수원어민교사의 기준 및 선발	192
10.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요건	194
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194
12. 해외 취득 학위의 국내 대학 인정 여부	195
13. 재외교육기관 파견교사 수당	196
14.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196
15. 정부초청외국인 전문학사 과정 후 편입에 따른 장학금 지급여부 등	197
16. 연구윤리 검증 시효	198
17.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한 세부 기준	199
18. 대학 내 학교기업 설립	200
19.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교육사업 가능 여부	201
20. 산학협력단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201
21. 한국사 능력 시험	202
22.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경력 인정범위	203
23.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204
24.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204
25.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205
26.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205
27.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206
28.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207
29. 비전임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가능 여부	208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21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222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239



Chapter 01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정정

질의

유치원 생활기록부 보관 및 발급장소가 어디인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지, 생활기록부 상의 성명 개명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3-29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입력), 서식, 정정,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17-140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같은 지침 제5조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고,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의 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하에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기록부의 정정은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정정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의 인터넷 발급 문제는 향후 중장기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증진과 유아의 발달 상황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안, 교육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질의

통학버스 간힘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02 유아교육정책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탑승자 하차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통학버스 하차 시 인솔자의 역할로서 버스 내 잔존 유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기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한 민원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합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포함하여 우리 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간힘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안전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전자 대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운전자·동승보호자 대상 안전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현재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 및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Sleeping Child Check) 제도’ 등 기타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질의

각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 그리고 전국의 교육지원청(전국 약 176개 기관, 16년 4월 기준)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편성한 수당의 항목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6-26 유아교육정책과

먼저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유치원 현장에서 일관된 호봉 체계 하에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공립유치원 교직원과 동일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제3항,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이며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18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46만원(기본급 보조, '17년 대비 월6만원 인상) 및 담임 교원 1인당 월 13만원(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176개 기관)의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지원 현황자료는 우리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대책

질의

유치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리 대책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7-12-04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유아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신고범위에 ‘학대 의심’ 포함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강조)하도록 하는 등 지도와 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동복지법」은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간 유치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해임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과 동시에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변경을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토대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유치원 준교사 자격 시험검정

질의

유치원 준교사 시험검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17-12-12 유아교육정책과

현재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있으며 유치원 준교사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따라 시험검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시험검정(준교사)의 시행은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할 경우 시행되는 제도이나, 현재 유아교육과 또는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대학원)에서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수급이 원활하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 준교사 시험검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유치원 CCTV 설치의 법적 근거****질의**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가동을 중지 또는 배선을 제거·훼손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2-09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의 CCTV 설치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 되어진 부분은 아니나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 내 CCTV 설치 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를 할 경우 사전의견(학부모, 교직원 등)을 수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의 비공개 공간(필요한 경우 공개공간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로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CCTV 설치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질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28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인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년 약 2조원의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책무성 확보,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을 40% 확대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정 사용 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원비 상한제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 무엇보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유치원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 시도별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사립유치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권장할 계획임을 안내 드립니다.

특수교육

8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기준

질의

유치원특수반 법정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초과하여 학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보육과 특수교육을 위해 법정정원 4명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8-05-29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서는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 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과밀학급이 되기도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따라 연차적으로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질의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신

2018-11-15 특수교육정책과

2018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1%가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통합 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등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다운학교' 운영을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모형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장애이해 수업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더욱 더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

특수학교 신·증설

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8 특수교육정책과

국정과제(51-2) 및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2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23교 및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초등학교 취학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 재교육****질의**

누리과정(3년)을 수료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특수교육)과정에서 다시 교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3-21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령이 되었을 때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1년 이내) 할 수 있으나, 취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 특성과 생활연령에 맞는 개별화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특수교육(만 3세부터 만 17세 까지 의무교육)을 제공 받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에 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식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유예를 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하여 교육지원은 보류됩니다.



Chapter 02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교수요목기, 제1·2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

질의

교수요목기와 제1, 2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에 관한 목록, 검정기준, 검정과정, 점유율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신

2018-07-19 교과서정책과

교수요목기와 제1, 2차 교육과정기에 통과된 역사교과서의 목록과 검정기준, 검정과정, 점유율에 관한 자료는 현재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다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누리집(www.ktbook.com)에 검정제도 관련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며 제1, 2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의 경우 교과서박물관(세종연동면 소재, www.textbookmuseum.co.kr)에 일부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5개정 교과

질의

2015개정교과과정을 보니 역사는 2020년 적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2019년)에 중2학생들은 2009년 개정교과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역사 1, 2 교과서는 2020년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쓴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2018-10-31 교과서정책과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은 지난 '18년 7월 개정 고시되었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는 2019년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거쳐 '20년 3월에 학교 현장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현장 보급 전('19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3

초등국정도서(지도서) 파일 인터넷 공유 여부



현직교사가 초등국정도서 중 지도서 PDF 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해도 되나요?



2018-07-19 교과서정책과

지도서를 포함한 초등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나, 그 특성상 타인의 여러 저작물을 수록하여 제작되는 저작물입니다. 즉 교과서 내의 삽화, 사진, 텍스트 등은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저작물을 공유할 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률

질의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률이 궁금합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률’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회신

2018-02-28 교과서정책과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정, 인정 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주문·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률 산출을 위한 주문량 통계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공급부로(031-8071-79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83~1985년 발행된 교과서 및 표준전과

질의

1983~1985년 발행된 교과서, 표준전과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7-11 교과서정책과

1984년도에 발행된 교과서는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에 92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1,074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 가능한 소장처와 온라인 검색경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①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152번지 홈페이지(www.textbookmuseum.com) → 스마트 전시관 → 교과서 자료관 → 교과서 검색 → 조합검색(발행년도 지정 검색)
- 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7 홈페이지(www.textbook.ac) → 교과서 정보관 → 디지털 도서관 → 교과서 검색(발행년도 지정)

6 휴업일 명칭 등

질의

1. 학교의 휴업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에 대한 용어 정의가 궁금합니다.
2. '재량휴업일'은 해당하는 특정일을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으로 학사일정을 확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일의 특정일을 휴업일(사유 불문)로 정하면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량휴업일로 볼 수 있나요?
 - 2-1. 특정 학년만(예: 2,3학년, 1학년 제외) 휴업할 경우 해당 휴업일도 재량휴업일로 볼 수 있나요?

회신

2018-11-28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로 합니다. 즉 학기는 수업일과 휴업일로 나누어 지므로,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휴업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업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1의 답변)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모두 휴업일입니다. (문의2 의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일은 학교장이 휴업일의 명칭 (사유)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2-1의 답변)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기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학년의 휴업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대회참가 사실 기재

질의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회 관련내용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회 참가에 대한 많은 내용을 학생생활 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만 기재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적인 제도를 철폐해 주세요.

회신

2017-12-22 교수학습평가과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수상실적은 교내상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하고, 각종 교내 대회 관련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회 관련 내용 기재 불가능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8 예술고등학교 나이스 내신등록 3과 분리산출 이유

질의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실기에 중점을 두는 예고들의 특성과 학교마다 과수가 다른 예고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3과만 분리 산출하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 생겨나고, 예술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학교 교육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전 되어야 할 시대에 굳이 3과로 한정지으려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논의 되는 대학입시도 중3부터 적용되는데, 학교측 홍보여부 부터 강하게 단속한 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의 의도가 실기 하는 아이들끼리의 내신 경쟁을 유도 하는 것이라면, 3과가 아니라 전체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8-05-09 교수학습평가과

교과학습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95호, 제243호)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훈령 상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처리 시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 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와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령 상 수강자 수는 최근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특성 및 방향 따라 규정되어 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나이스 시스템은 학과 수에 대한 제한 없이 단위수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 단위수별로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단위수(이수단위)는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 평가 관련 지침 준수 철저 요청'은 특정 교육청의 소속 학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제7조(장학지도)에 따라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바, 시도교육청이 예술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

질의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2018년 9월 20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송부한 생활기록부를 B학교에서 검토 하던 중 2017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중 한 영역의 이수시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후 B학교로 송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B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접수 후 A학교에 누락된 항목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야 하나요?



2018-10-19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에 대한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9조(자료의 정정) 제2항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학적을 두고 있는 학교(전입교)에서 입력 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담임교사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10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따른 학교 성적 산출방식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적용받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진로 선택 과목 대입 전형 자료 제공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나요?



2018-10-10 교수학습평가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발표 시, 성취평가제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하여 대입에 반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항목 및 대입 자료로 송부하는 항목은 모든 과목이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로 동일합니다.

11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

질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며, 몇 개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된 자격증을 다른 자격증으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연도에 취득한 자격증만 해당연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20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에 따라 작성 관리하는 자료이며 이 지침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기재 가능한 자격증인 경우 자격증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자격증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12 SW특기자전형 공교육정상화법 저촉 여부

질의

여러 대학에 SW특기자 전형이 있어 알아보니 교외 수상실적이 필요하고 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 한정되는지, SW특기자 전형은 정확히 어떤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2018-09-18 교수학습평가과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항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동법 제16조(적용의 배제)에 의하면,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각종 입학 전형에서 동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교과 즉,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관련 내용을 평가한다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SW특기자 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관련 내용을 평가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기자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이 ‘특기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경우,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 및 교과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기자 전형 운영 시 전형 자료로써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입력 주체

질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195호) 해설 및 기재요령 제4조(처리요령)의 해설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교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활동의 누가기록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교사인가요 아니면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담당교사인가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나이스 입력권한을 학급담임교사 이외에 부여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8-01-18 교수학습평가과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안내 및 시도별 후속 조치 계획 제출 요청(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6158.,16.11.28)’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관리 및 기재의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및 ‘2017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항목 입력 주체를 학급담임교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누가기록의 주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 및 관리의 책무성 등을 고려할 때, 특기사항 입력주체에 준하여 누가기록의 주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질의

초등학교 1~2학년때 과학 사회 도덕 등을 바로 배우지 않고 통합교과를 배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1 교육과정정책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한 집중 시간이 짧고, 매우 활동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은 교과라고 하는 분절된 지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연계시키고 구체화 시킬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15**고교 심화반 운영****질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적 우수반, 심화반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8-11-27 교육과정정책과

성적 우수반 운영 관련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2008.4.15.)의 후속 대책으로서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기로 합의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시도 교육청을 통해 동 사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체조교육 활성화

질의

초, 중, 고 대학에서 체육시간에 30분 몸풀기 운동과 조회시간 및 수업후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체조를 각 학교에 알려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회신

2018-07-10 교육과정정책과

일반적으로 체육시간에 이루어지는 체조 등 준비운동은 신체의 체온을 증가시켜 체육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본 운동 참여 시 부상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최근 고시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서는 체육수업 중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의 방법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조, 스트레칭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은 교육 내용의 특성 및 주제,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국가 수준에서 특정 활동의 활성화가 곤란하며, 방과 후 및 쉬는 시간의 신체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초중등학교에 보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수학습 자료에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조 활동을 안내하여 학교에서의 체조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7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부 방침

질의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방침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오래 전에 여러 이유로 학교 교육 운영에 있어 교과교실제를 확산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구조적 실정과 지역별 차이에 의해 일괄 적용은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정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정책의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폐기가 된 것인지 정확한 교육부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1-26 교육과정정책과

교과교실제는 2014년까지 도입 확대를 지원 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구축된 교과 교실 환경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교수·학습 개선 등 내실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시·도 자체 계획에 의거한 사업 추진 등 현장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를 적극 활용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간 배치에 관한 경직적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불필요한 학생 이동은 최소화 하되, 학점제에 따른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환경 구축으로서 교과교실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18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

질의

체육 중·고등학교는 그 특성상 경기 출전, 강화 훈련, 전지훈련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의 학생들 보다 수업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 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와 면제받을 수 있는 수업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5-25 **민주시민교육과**

각급학교(체육중고 포함)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수업일수의 1/3 범위(190일 경우 63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9

귀국예정학생 국내학교 편입

질의

최근에 독일로 이사를 했고 아이 생일이 2012년 8월 29일인데, 독일은 초등 학교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내년 초에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한국에 돌아가면, 한 학기(반년)가 늦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래(한국으로 같은 나이 친구)보다 한 학년을 늦춰서 한국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래와 같은 학년으로 다닐 수 있는지 2) 또래와 같은 학년으로 다니게 된다면, 한 학기가 부족한데 중·고등·대학교 입학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학년 선정 시 테스트가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4) 해당 기준은 각 시·도마다 공통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5-25 **교육기획보장과**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는 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해외이주(이민), 주재원파견, 교환교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와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유학으로 간주합니다. 인정유학생은 향후 국내에 귀국하여 한국학교로 재취학 시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기간(학기 수)을 토대로 학년을 배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처럼 하반기에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를 가진 국가에서 취학(처음 학교에 입학 것)을 하는 경우 향후 귀국시, 한국과의 학제차이로 인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8월(7살)에 입학할 경우 - 올해 8월에 입학할 경우(7살) 한국에서 내년에 취학할 동년생들에 비해 한학기가 빠르게 교육이 진행되므로 '일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할 때 한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되므로 동년생들과 같은 학기를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시 총 이수학기는 25학기로 대학진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내년 8월에 입학할 경우 - 내년 8월에 입학하게 되면 동년생들에 비해 1학기가 늦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귀국 후 학년배정 시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학습결손을 우려하여 한 학년을 유급, 한해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년결정의 최종권한은 전입대상교에 있으므로 학교에서 판단하여 동년생들과 같은 학년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될 경우 고교졸업시 최종 이수학기는 23학기로 한학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25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상기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자녀는 23학기를 이수하여도 대학진학시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교육부, 대교협차원의 공통지침입니다. 물론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귀국학생의 전편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안내드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1, 2번 중 어느 쪽을 선택 하셔도 상급학교 진학에 큰 문제는 없으나 귀하의 자녀가 향후 동년생들과 같은 학년에 배정받기를 원하신다면 한학기가 중복되더라도 올해 8월에 입학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필요
- 2. 성적증명서
- 3.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하는 경우만)
- 4. 출입국 사실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7. 기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 교육청 확인)

20 귀국학생의 학력인정

질의

내년 3월 경 직장때문에 베트남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 현7세, 내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육부에 나와있는 초·중·고 학력인정 목록을 보았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및 외국인 학교 학력인정을 보니, 호치민과 하노이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가는 곳은 호치민, 하노이도 아닌 나트랑에서 3~4시간 가면 위치하고 있는 꾸이년, 푸옌성 이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나트랑을 비롯하여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5년 이상 살게 되면 아이의 5년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한국에 오면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건가요?

회신

2018-09-13 교육기획보장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에서 해외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귀하처럼 부모의 해외취업, 주재원파견, 교환교수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부모와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외유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외국학교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해외한국학교 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란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국 후 국내학교 진학시 필요한 제출서류(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공증을 생략해도 좋다는 허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처럼 부모의 직장으로 인한 동반출국의 경우 5년 뒤 귀국하더라도 한국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취학할 수 있으며 해외학교 재학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베트남 현지의 정규학교에 취학하셔야 하며,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학교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 뒤 귀국시 귀하께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귀국 전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 공증을 받는다. 2.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측에 나트랑 지역 학교목록의 추가를 요청한다(목록 추가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공증이 면제됩니다). 현지 학교목록은 외교부에서 조사하여 교육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정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학력 인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수정방법

질의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귀국 예정으로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확인 결과,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초등)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준비하여 목록에 추가하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8-09-21 교육기획보장과

해외학교에 대해 학력은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국시 제출해야할 학적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귀국 후 자녀의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여부는 전적으로 국내학교장의 권한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귀하의 소재지 관할교육청 또는 귀국후 전입할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목록은 외교부의 협조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조사하여 교육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목록수정을 해드리기는 힘들고 반드시 해외공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거주 중이신 지역의 대한민국공관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현행 규정상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6개월 이전에 학교에서 제명처리 되어야만 검정고시 시험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줄여 주실 수 없나요?

회신

2018-02-02 교육기회보장과

검정고시는 가정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퇴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경과 규정을 둔 것은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자퇴일로부터 공고일까지 3개월 미만으로 하게 되면, 내신성적이 불리한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자퇴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8년 초등 코딩 의무교육

질의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중등·고등까지 코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나요? 그리고 코딩교육이 시행되면 필수적으로 “아두이노 키트세트”가 사용되나요? 초등용(초등 맞춤형) 아두이노 키트세트는 성인용과는 다른 제품으로 사료됨. 2018년 결정된 초등교육용 아두이노 키트세트와 초등교육용 코딩학습자료의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부터 정말로 초등(유치원·중등·고등)에게 의무적으로 코딩교육이 되고, 초등 맞춤형 아두이노 키트세트가 공개 된다면, 여기서 많은 새로운 특허기술과 일자리창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8-01-11 미래교육기획과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배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지난 2015년 9월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9학년도부터 5~6학년 실과에서 17시간 이상 SW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되며, 중학교는 '18학년도부터 정보 과목을 통해 34시간 이상 SW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SW교육 내용에는 아두이노 키트를 사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생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필요한 교구의 종류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 교육용 코딩학습을 위해 에듀넷(<http://edunet.net/nedu>),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포털(<http://software.kr>), EBS 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Code.org(<http://code.org>)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24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의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속적, 반복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봐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회성으로 sns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너 나대지 마라 등)을 했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서 학폭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신

2018-03-20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SNS에서 1회성으로 비난을 했다면 지속적, 반복적이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해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5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질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회신

2018-06-14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회신

2018-04-20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령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며,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호선(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27 학교폭력 재심청구

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의 조치이행 유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6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 학교장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청구 대상(가해학생에 대한 전학·퇴학·조치)만 유보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1호~7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유보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된다.
- ※ 재심절차와는 달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해당 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유보된다.
-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뤄져야 한다(재심결정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학생건강

28 학교급식 정보 확인 방법

질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급식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2-22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에서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이트를 통해 학교급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접속 ② [공시정보] - [공개용데이터] - [급식 실시 현황] 및 [급식비 지출내역] ③ 급식실시 현황 내용 :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운영 방식,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 급식비율, 급식담당 인력현황, 배식장소 ④ 급식비 지출내역 : 급식비 부담주체, 학생 1인당 급식비. 학교알리미에서 제공되는 급식정보 이외에 식품안전정보포털 및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정보는 개별 학교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29 학교설립 예정지 지정

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직선 거리 200m 이내인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축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대상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설립 예정지(이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나 A대상지 200m 이내에 현재 축사가 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때 ①A대상지에 학교의 설립이 가능한지? ②A대상지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축사의 이전이 필요한지? ③인근 축사를 이전 또는 폐지하지 않고도 교육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등을 거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2018-04-10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서 예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심의불가 시설)로서 동 시설이 예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 운영중인 경우 해당 용지를 학교용지로 선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환경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초등학교 라돈 관리 처분기준

질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상 라돈 기준은 148베크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8-04-20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교사 내 공기 중 라돈을 포함한 점검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내 공기 중 라돈의 경우 관련 유지기준이 148Bq/m³로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기, 교실 재배치, 환기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별도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2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학교보건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범위는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로 되어있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 조항 중 일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한정되어 적용인 것으로 명시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제3조, 제4조, 제12조 등에는 특별한 적용대상 명시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8-01-22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문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도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3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기록 제출

질의

초등학교 입학 시 뇌수막염 3차접종은 받지 않은 경우 입학할 수 없나요? 접종을 받았는데 누락된 것 같고, 해당 병원이 기억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4-25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는 시기는 학생이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므로 입학시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가 초등학교 입학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귀하의 자녀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병원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을 통하여 4월 중으로 전산 등록을 하시면, 학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기록을 제공받아 전산을 통하여 귀하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 학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감염병의 종류

질의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독청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2~4군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감염병, 몇 명 이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보건법’에서 제14조의3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고해야할 감염병은 법정감염병·비법정감염병 모두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염병, 몇 명 이상 발생 시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4-30 학생건강정책과

학교 내 발생한 감염병은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발생한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인원의 기준은 특별히 없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다양한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5 학교 환기설비 설치 요구

질의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시 실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장 시일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기청정기 대신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신

2018-07-16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신축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교사의 경우도 학교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우선 고려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안내(18.3.20.)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18.4.6.)를 통하여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는 많은 학교 내 특정장소에 우선 설치를 병행 추진 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일시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기정화장치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외기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고려한 적정 가동 및 주기적 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안내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부가적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질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대상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어 결정고시 되어 있으며, 그 결정고시안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접지에 학교시설(기존 중학교)이 있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이지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처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의한 “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법」 11조 1항 단서에 따른 규모(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고자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이 되는지?

회신

2018-08-08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건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호~5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질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8-08-22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를 포함한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속칭 ‘만화 카페’의 경우 그 영업방식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는지,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 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초등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2018-10-24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구장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9조 제2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9 기타유원시설에 설치 된 안전성검사 제외 유기사설(게임물) 설치 시 보호구역 심의대상 여부

질의

기타유원시설업 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유원시설업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상대구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게임물)이라면 보호구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2018-11-23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0~21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 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역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의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제도

40 휴업일의 학교행사 해당 여부

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을 연중 학교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2018-09-28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41 초등학교 입학연기 후 2학년으로 취학

질의

2018학년도 초등 취학대상자인데 면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 유예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원외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을 2019학년도에 1학년이 아닌 2학년으로 취학할 수 있나요? 교과목이수인정평가를 거치면 2학년으로 취학하나요?

회신

2018-11-07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취학이나 재취학을 하려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따라서 취학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2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

질의

학칙에 성인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성인 입학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8-11-08 교수학습평가과

법령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등 학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34쪽 학적사항 해설 내용 참고] 아울러 시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칙에 따라 입학 전형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학칙에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 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3 졸업 후 학생 신분

질의

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8-01-05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29일에 학교의 졸업식을 시행하여도 2017학년도 2학기 종료일인 2018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신분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4 초등학교 재취학

질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 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10살인 경우 내년엔 일반학교로 재취학하려고 하면 수업일수가 없어 1학년으로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9년 3월에 4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12-07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한국의 중국소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옮김에 있어 이전에 일반 초등학교에 학적이 있었다면 ‘재취학’으로 처리하고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취학’으로 처리되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일반학교로 옮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5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질의

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10-01 정책협력팀

학운위는 학교장과 협력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통해 학교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항, 제61조(시정명령)에 의거하여 관할청은 학교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항에 의거하여 국·공립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에 의거하여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3호)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3조 1항).

4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

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원 전체회의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실)이 참석합니다. 과연 지방행정공무원도 교원과 똑같이 교원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12-12 지방교육자치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전체회의란 학교 내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7 학교 설립 요청

질의

○○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서 교육감이 학교 설립에 관한 제반 여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학교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때 총사업비 규모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고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교의 총량과 관계없이 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입주현황(분양공고 기준), 인근학교 현황(거리, 학생수용능력), 향후 학생수 추이,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가 의뢰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 및 이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에 따라 해당 시도의 학교 신설(증축) 관련 계획 및 설립(증축) 일정(개교시기), 그에 따른 공사 진행 상황, 신설과 증축에 따른 학생배치 업무, 통폐합 관련 계획 및 일정, 학생통학구역(학군 지정 및 학생배정)에 관한 사항, 통학로의 개선과 이와 관련한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및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기술 등을 교육하는 ‘학원’(학원법 상의 학원)의 경우 위 법조문 상의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가 1번과 같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조문상의 ‘주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폐교지역의 지역주민을 뜻하는 말인지 넓게 해석해서 타지역의 국민들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19 지방교육재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목적)에서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법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교육용시설의 인정여부는 체험료나 사업등록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폐교활용법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대부분 매각한 경우 폐교재산의 용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서 교육용시설의 여부는 해당 폐교재산을 대부분 주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교활용법 상의 ‘주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이나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합니다.

질의

○○중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사업)을 위해 소속 자치구에 대응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거 ○○구는 '18년 본예산 편성기준 국·시비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이 존재하여 보조사업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을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군구는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사유에 해당하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대응투자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1-22 지방교육재정과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통해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투자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제한을 받는 시·군·구 지역은 대응 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8-09 지방교육재정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문의하신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동법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51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

질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에 의하면 교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7항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부분에서 ‘상근직원이라 함은 직속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교 교직원의 상근직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근직원의 범위를 주 40시간 근무자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7-26 지방교육재정과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명확한 법률적 기준은 없으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6346, 2012.9.27.)에 따르면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52 전학 대상자 요건

질의

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전입학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으로 그 해당규정을 근거로 국민에게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전입학 계획에 법원성을 부여하는 법령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회신

2018-03-07 학교혁신정책과

첫째,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거주지 전입에 따른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따라 전학 요건이 성립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둘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의거 중학교 전학은 해당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합니다. 학교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장이 정한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 전학의 요건으로 전가족 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별 정원을 관리하는 바, 선호 학교 쏠림 등에 따른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가족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가족 이주가 아니더라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바 이상의 국민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이와 같은 조치가 모든 학교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의 원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초등학생 조기진급

질의

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이후 12월에 공립 초등학교로 재취학을 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유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모자르거나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검사결과 사회성면에 치료가 필요해서 미술치료중이구요. 여러모로 학교에서 적응하며 보내려고 노력중인데 유급이 된다는 말에 또 힘들어합니다. 조기진급이나 이수인정 같은 것으로 내년 4학년 진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12-26 학교혁신정책과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불가능하나*,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문의주신 조기진급과 관련하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초등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업성취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바, 조기진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교원 정책

54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

질의

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

2018-05-09 미래교육기획과

교육부는 '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교과와 '18년부터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을 필수화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중, 고등학교 SW교육은 정보컴퓨터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SW교육은 정보교육, 코딩교육, 프로그래밍교육과 유사한 용어로서, '교육 내용'을 의미하며, '정보컴퓨터'는 중, 고등학교에서 SW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표시자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W교사, 정보교사, 정보컴퓨터교사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는 시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원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등 정보교과는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따라 컴퓨터과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

질의

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1-15 교원정책과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3. 출장과 초과근무’(p. 91)가.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나.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Ⅷ. 2. 바. 1) 국내출장(p. 414)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합니다. 가. 시간을 다룰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또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56 교원의 저작권 수입

질의

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8-02-08 교원정책과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공무에 부당한 영향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이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따라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나, 금지가 되는 영리업무인지, 겸직허가가 가능한지는 허가권자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참고사례(P165)에서는 1회적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도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57 교원의 연수휴직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이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2. 연수 휴직 신청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연수 휴직은 학사과정만 가능한가요?

회신

2018-02-20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연수휴직)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2. 연수휴직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휴직신청서(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명시), 휴직사유 입증서류(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휴직에 대한 자체 사정을 고려한 휴직 절차, 필요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연수휴직은 국내의 해당되는 연구(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학위취득이 아닌 연수 과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수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회신

2018-03-09 교원정책과

1. 직권휴직은 휴직사유 발생시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판단하여 휴직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역휴직에 이어 질병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는 진단서 등에 따른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하므로 소속된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뿐 아니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26조).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이 장기요양(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 또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9 임용고시 결격사유

질의

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회신

2018-04-05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조항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 교원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시험 응시예정 지역인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4-09 교원정책과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연수휴직) 또는 제12호(자율연수휴직)을 통한 휴직 후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의 목적과 다른 사항(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어느 범위까지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지는 휴직의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관할 교육청의 인사담당자 등과 상의하여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61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5-15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제64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습니다.

*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란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임(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p.157~158 참고)

겸직허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 및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2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질의

1.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
2.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회신

2018-08-01 교원정책과

경조사휴가 중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또한 휴가일수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3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

질의

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 전에 복직할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08 교원정책과

군복무 단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조기 완료된 것이므로 병역휴직 중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교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므로 실제 휴, 복직 등 업무처리 시 소속 교육청의 업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4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질의

과거 국립 소속 초등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현재 국립 초등학교 소속으로 근무 중 행정소송을 통하여 상기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재징계 절차의 요구 권한은 어느 기관에서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16 교원정책과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징계라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장래에 행해지는 것으로 전보에 의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권자도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재징계 의결요구 및 처분권자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교육 기관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65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

질의

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8-09-04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금지된 영리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대해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은 소속기관의 장(임용권자)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겸직허가 대상 업무를 허가 받지 않고 겸직하는 경우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6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질의

2016. 1. 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대상 및 부칙 제4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06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상 “임용”은 제2조(정의)에 따라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의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은 제2조(정의)의 “임용” 중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2016.1.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의 내용은 개정된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1.27. 이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2016.1.27.자 개정된 법 제10조의4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해당자의 임용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 임용 중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2016.1.27. 이전의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는 교육공무원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67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질의

5세(만4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부부 교육공무원이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2 **교원정책과**

육아시간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 공무원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만 5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허가권자(학교장)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8 **자녀돌봄휴가**

질의

자녀돌봄 휴가일수가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는지, 자녀돌봄 휴가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3 **교원정책과**

자녀돌봄휴가는 특별휴가로서 연가일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일 경우 자녀 병원진료를 위해 자녀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자녀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행도 포함됩니다. 자녀 병원 진료를 위해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증빙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병원 진료 동행이 확인되는 진료비계산서 등도 포괄적으로 확인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9

여성보건휴가 사용

질의

임신 중 병원검진 때 여성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꼭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사라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반일만 여성보건휴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신

2018-10-17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인 여성보건휴가는 여성 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성보건휴가의 반일 신청 가능 여부는 1일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이스 근무신청상황을 통해 특별휴가로 신청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휴가로 처리되며, 분리하여 2일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0 교육공무원 초과근무

질의

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 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6 교원정책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학은 휴업일이며 법령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41조 연수, 연가 등 학교장의 별도 허가가 없다면 수업이 없어도 출근해야 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일이 출근일이라면 보충수업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정한 8 시간을 정상근무해야 하며, 출근일이 아니라면 보충수업 종료 후 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 중이라도 출근일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시간외근무는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충수업처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일 것이며, 그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출근일 계산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보충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 출근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71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11-21 교원정책과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분양의 경우 그 업무에 계속성이 예견된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겸직허가의 권한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2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초등교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조퇴 2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018-11-27 **교원정책과**

2018년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일(日) 기준 4시간 이상 최소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육아시간, 연가, 병가 등을 제외하고 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4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날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병조퇴 3시간 사용 시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도록 육아시간 1시간 이하로 실시 가능, 1시간을 초과하여 기실시한 경우 최소근무시간 4시간 미충족으로 육아시간을 연가로 처리

귀하께서 일(日) 기준 4시간 이상을 정상근무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육아시간, 조퇴 등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교원 복무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사립학교 교장 임기

질의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이라면 임기 만료일을 학기말에 맞추어 발령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7-12 **교원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는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학기 중에 있으면 학기말을 임기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장의 임기에 대해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 임기 산정 시 4년을 초과하여 학기말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질의

1. 2018. 3. 1.부터 수석교사에게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에 해당되나요?
2. 인건비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3.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에 포함되나요?
4.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되나요?
5. 2018. 3. 현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교장 등 관리직 교원에게 지급된 보수 직무수당(직급보조비)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나요?

회신

2018-03-13 교원정책과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의 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으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직급보조비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는 ③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④ 연말정산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산정은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기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5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질의

1.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교감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작성되어 본인들에게 순위를 공지하였고 그 순서에 의하여 승진발령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사관련 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고, 그에 따른 승진명부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04 교원정책과

교감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감임을 알려드리며,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재작성되지 않는 한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승진규정 제4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인사관리기준의 적용으로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76

교원의 휴·복직

질의

토요일 등 공휴일 복직과 학기 중 휴·복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7-12-11 교원정책과

교원의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5조에 따라 자녀 간병을 위해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간병휴직은 청원휴가로써 해당 교육공무원이 휴직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공휴일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 휴직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질의

저는 기간제 교원으로, 동일 학교에서 3회 계약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하였으나 재계약 과정에서 13일과 10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백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관계의 지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25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 동안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이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복무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반영하여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의 합이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이 아닌 날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8 동반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

질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동반휴직 총 기간은 6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총 휴직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신

2018-10-01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반휴직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재직기간 중 총 6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후 다시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휴직의 연장인지 새로운 휴직으로 볼 것인지는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여건 등을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속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9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 재출산으로 조기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018-10-01 교원정책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두 4852 판결 참조).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질의

쌍둥이(둘째, 셋째)에 대해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면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10-30 교원정책과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1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질의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호봉 승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9-04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에 따라 고정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격 발급에 따른 호봉 인상은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부터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82 기간제교원 결격사유

질의

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7 교원정책과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원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은 물론 강사(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포함)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83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질의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20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 유무는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채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교원 자격 · 복지

84 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아동 관련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 유아교육대학원 교원양성 과정에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12-22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 관련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진학하고자 할 교육대학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 및 자격증 취득

질의

2018년도 기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 교육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중 해당 교육대학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수여 자격이 교육부에 의해 박탈되거나 대학원 측에서 해당 과정을 폐쇄하더라도 이미 재학 중인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6-27 교원양성연수과

2018년도 기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은 교육부 사이트에 탑재된 2017년 기준 자료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해당 교육대학원의 승인정원이 폐지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기이수 중인 재학생이 졸업 시까지 종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86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

질의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 포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학교현장실습일 경우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실습을 2주씩 2회 나누어 실시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8-22 교원양성연수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4항에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또한,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주씩 2회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질의

사서2급 교사 자격증 요건이 사범대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범대로 편입을 한 후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면 사범대 졸업한 사람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으므로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를 따로 받지 않아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03 교원양성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른 '사서교사(2급) 4호'(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 '사서교사(2급) 4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째,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사범대에 문헌정보교육과가 설치된 학교는 공주대가 유일합니다. 둘째, 사범대(사범계학과 포함) 학생이 사서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 또는 문헌정보교육과(공주대에 한함)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범대 편입 후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을 통한 사서교사 자격 취득'은 복수전공을 하는 문헌정보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거나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시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8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질의

동일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과 가능 정원은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요?

회신

2018-09-10 교원양성연수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동법 2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원양성규모를 축소하는 정책 취지에 따라 2013년부터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결원 발생 시에만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9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

질의

올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임용과 동시에 지방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야간 학사과정(RN-BSN과정) 3학년에 편입학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다니면 등록금을 상한액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인데, 혹시 이 경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1 교원양성연수과

인사혁신처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은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여 고졸공무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업무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으로 학위 미 취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인사혁신처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선발을 통하여 운영하는 별도 과정으로 민원인께서는 교육공무원으로 학위를 바탕으로 채용된 경우로 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 등을 졸업하여 교원의 자격을 기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0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의 연수는 휴업일에만 가능한가요?

회신

2018-10-15 교원양성연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관할 사항이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공문 안내 등을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방학 또는 휴업일에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연수 본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단축근무 및 조기퇴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학기 중, 수업이 끝난 방과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를 활용하거나, 연수 출장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학교장 승인을 거쳐 출장 등 복무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91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

질의

중·고등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가 지도하면 안되나요?

회신

2018-05-18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현재 68개입니다. 이에 비해 전국 중등학교에 개설된 과목 수는 약 700여개에 달하여 모든 과목에 대해 자격증 표시과목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형편에 따라서 관련 전공과목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 전공 표시과목 소지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92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질의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조항에서 교직과정 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이 설치된 곳이나 사례, 위의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의 유형과 자격호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5-18 **교원양성연수과**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2006.4.6.)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701호, 2005.12.7. 공포·시행) 되어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자격 검정기준을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하고, 「유아교육법」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개설된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2006년과 200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93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질의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6-08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 제6조 제4항에는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94

교직과정 이수대상 선정 전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

질의

저는 현재 일반대학의 교직이수과정에 있는 학부생입니다. 제가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6-21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6쪽에는 교직학점 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 교직과목 이수 5)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학점만 인정해야 한다.
- ④ 위 ③에 따라 학점 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과목이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5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질의

특수학교에서 경력과는 무관하게 중등 2급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학교급 (중등학교)만 동일하다면 1년 경력 이상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특수교육 전공을 했을 경우 특수학교 1급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교원자격실무 편람에 2급자격증이 없어도 4호에 해당하면 바로 1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7-23 교원양성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위의 4호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시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96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절차 및 방법

질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7-23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는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그 권한이 대학이나 시·도 교육청에 위임 및 위탁되어 있습니다.

97 교직이수 가능 학과

질의

A학과(교직이수 가능) 학생이 B학과(교직이수 가능)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이수는 가능하나, C학과(교직이수 미가능) 학생이 B학과를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 하는 것은 금지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7-26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에는 교원 자격증의 수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문의하신 ○○대학교 A학과와 B학과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과이나, C학과는 교직이수가 가능하지 않은 과입니다. 복수전공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입학한 학과가 사범대학 소속과이거나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이어야 합니다.

98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질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10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공고된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문의 주신 정신과 진료 기록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및 동법 제5조(채용금지)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

질의

작년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문제로 서울 등 대도시권 지역에서 정원 급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방 교사의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가산점 6/3/0점 확대 및 2차 최종 성적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대책 발표 이후 2차 최종 성적까지 지역 가산점을 적용하는 정책이 확정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각 지역 교대의 설립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지역가산점 확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대책과 확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2-02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는 도·농간 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지역 가산점 상향 및 최종 합격자 결정시 포함)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일부 시도에서는 2019 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시 지역가산점을(현행 3점에서 6점) 상향 조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산점을 최종합격자 결정시에도 반영하는 부분은 법령 개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사항으로 현재 내부 검토중인 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100 장애를 가진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합격자에 대한 건의사항

질의

1. 임용시험 시 장애전형과 일반전형의 수험번호가 다릅니다. 장애전형은 국가에서 인정한 정원외 전형으로 시험을 치름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1차와 2차에 모두 해당된 내용입니다.
2. 합격 후 신규교사 연수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나다순인데 장애전형 합격자만 맨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여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3. 발령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발령을 받음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장애의 유무, 정도, 부위까지 교장, 교감에게 전달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업무분장에 있어 학교장과 교감은 알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령 학교 운영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학교장과 교감이 알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교감이 알고 있는 교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밝히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학교의 전보, 이동 등에 있어서도 장애교사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전근을 할 때마다 늘 장애교사라는 게 새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전달되고 또 이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

2018-03-12 교원양성연수과

1.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과 장애전형의 수험번호가 다른 부분에 대해 추후 시도 공동관리위원회(4월 이후 예정)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임용시험 응시에정인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신규교사임용예정자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연수원)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3. 발령, 전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교원의 전보에 있어 장애교사의 경우 전출 시 장애유무 등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교장 및 교감은 학교경영과 교무의 최고 관리자로서 장애인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등에 대한 근무능력, 신체 장애 유무 등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장애인교사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는 점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시 장애인교사 전보 시 불필요한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 하겠습니다.

101 교사 자격 확인

질의

제가 중등학교정교사2급(화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중학교 과학교과교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04 교원양성연수과

중등학교 정교사 과학(화학) 자격은 2000년 표시과목 변경에 의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공통과학 자격과 중등학교 정교사 화학 자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중등학교 정교사 과학(화학) 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공통과학 자격과 중등학교 정교사 화학 자격을 동시에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등학교 정교사 화학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공통과학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표시과목 변경에 의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공통과학은 중등학교 정교사 통합과학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표시과목 공통과학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통합과학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중등학교 정교사 과학(화학)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통합과학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중등학교 정교사 화학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통합과학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표시과목별 교원배치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질의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대학원생 입니다.(2007년 입학, 2009년에 교직이수 * 교직이수과목 수료)

2018년 1학기에는 졸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직 이수를 위해 응급처치 2회, 적인성검사 2회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응급 처치 및 인성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교직과목을 다 수료한 이 시점에서 응급처치의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해주며, 또한 학기 당 한번만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2년 후어나 자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교육부와 학교 간에 응급처치와 적인성검사에 대해 한학기에 모두 마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인정해주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8-01-22 교원양성연수과

귀하가 '09년 9월에 교육대학원 수료 후 '18년 1학기에 졸업할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 (2015.12.15.)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09년 9월 교육대학원 수료자를 '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상 남은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2012.11.6.)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13년 3월 1일 시행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 대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는 당시 졸업이 아닌 수료상태이므로,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103 사서교사 자격 취득

질의

정교사 한문2급, 정교사 일본어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서과정(학점)을 이수하면 정사서 2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교사 사서2급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26 교원양성연수과

정사서 자격과 평생교육원 사서과정은 사서교사 자격 발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등학교 일본어(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실 경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원은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교원정책-양성·자격)에서 '2017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0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련하여 납부금액 및 연금액, 최소납부기간, 수급일, 수급일에 국가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0-05 교육협력과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의 8.5%를 납부하고 연금액 예상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재직기간 3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1%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법률 개정이나 연금개혁 등에 있어서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소득대체율은 자신의 월 평균소득의 51% 정도로 월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함).

더불어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급일은 수급자의 사망시 까지이고, 수급일에 국가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5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

질의

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시 몇%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3-14 교육협력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1. 교원경력의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보고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106 수석교사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 가능 여부

질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1)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교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석교사도 교직수당 가산금1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사’에 해당하는지요?



2018-08-29 교육협력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2호 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원은 교사와 수석교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 제20조에 따라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임무를 겸하므로 상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7 육아휴직 인정기간 및 호봉 재획정



둘째 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교원의 경력인정을 위한 호봉 재획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휴직 기간 2년 2개월 중 2개월만을 인정받은 제가 추가로 10개월의 호봉을 인정가능 여부와 10개월의 호봉이 추가 인정 된다면 호봉재획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2018-08-29 교육협력과

둘째자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2002.1.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확정은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재확정 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의 재확정 및 정정 등에 대한 판단은 호봉 확정 및 승급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08 예산부족 시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질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7조의2 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8-04-02 교육협력과

먼저,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9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질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이 매년 2월 28일인 관계로 8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정규교사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기간제교사에 비해서도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8월에 퇴직하는 정규교사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신

2018-04-10 교육협력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추진 시 관련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Chapter 03

고등교육



학사 · 제도

1 등록금 반환 기준

질의

대학 입학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퇴를 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3-20 대학재정장학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사유>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위의 반환기준 외에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학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질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8-01-25 대학재정장학과

1.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18년도의 경우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 '18년도-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17. 11. 17(금) ~ 12. 12(화) 완료

3. 또한,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후, 1일 ~ 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3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및 수혜횟수

질의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미달 시 C학점 경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재학 중 최대 몇 번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8-20 대학재정장학과

1.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장학금이라는 성격 상 백분율 80점 이상(기초·차상위 70점 이상)이라는 일정 수준의 성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2. 저소득층의 성적 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인해 소득 1~3구간 학생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백분율 기준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 국가 장학금 지원 (학생 선택 적용 불가)
3. 또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들에게도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2차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재단은 학생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수혜횟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입학 및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됨을 말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4 국가장학금 재학생 구제신청 예외처리

질의

재학생 구제신청 기회를 이미 사용하였으나, 해외 실습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구제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8-02-19 대학재정장학과

1.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2. 단, 1차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기회 부여가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5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질의

저희 학교는 졸업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를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과목인데, 교내에서 수강하는 다른 교과목처럼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회신

2018-03-20 대학재정장학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초과학기에 대한 등록금 징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위의 징수기준 외에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대학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약대 학제개편 적용시기



자녀가 약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약학 대학에 진학한다면 2+4년제 과정에 입학하게 될 텐데,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6년제로 시행·운영된다는 말도 있고, 2+4년제와 6년제를 병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변경된 약대 진학 방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기존에 2+4년제 약대를 준비해오던 학생들은 어떻게 약대 진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4-16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에서는 정책연구, 약대 학제개편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약대가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변경된 약대 학제의 적용시기는 2022 학년도부터가 될 것이며, 각 대학이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여 신입학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최초 2년간(2022~2023학년도)은 현행 편입학 방식과 신입학 방식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약대 학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현행 편입학 방식을 유지하는 약학대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당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는 위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이 완료 되었음(대통령령 제29068호, 공포·시행 2018.7.31.)

7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질의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관련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응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6-11 대학학사제도과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2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적 배려 대상자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 사항은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

질의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7-19 대학학사제도과

대학 및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학위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이중학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칙 등을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

질의

대학교 의학과 3학년을 다니던 중 자퇴하였으나, 다시 의학과로 재입학하길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0-15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서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입학 여석 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 상황 보고(4.1.자,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학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

질의

간호학과 학사 편입을 원하는 청년입니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 편입 증원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1-07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는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와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8.10.18.) 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의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 교육과정 운영 사항 등을 고려, 학칙 등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구체적인 간호학과 편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편입을 희망하시는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지원

질의

직업전문학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졸업시 전문학사 및 학사 취득을 받는 학교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18-03-21 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등입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 훈련시설로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앞으로의 정부재정여건 및 타 장학금 지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다자녀장학금

질의

다자녀 가족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은 다자녀 전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나요? 그리고, 대상학점, 적용시점, 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시에도 적용 가능여부, 사립대와 국립대, 예체능 계열 동일 적용여부 등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6-07 대학재정장학과

교육부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년부터 국가장학금 내에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학생의 국가 장학금 신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소득, 성적, 연령 등을 심사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 유형(국·공·사립) 및 계열(인문·자연·예체능 등) 등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520만원~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금액, 지원 대상 등 다자녀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자녀장학금 외에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100점(B0학점) 이상. 단, 신·편입생·재입학 학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연령) '88.1.1. 이후 출생자

** (소득)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B학점) 이상

※ 소득, 성적 이외에 연령, 형제·자매수 등의 지원 기준 없음

13 대학의 수업 중 견학·실습·현장실습·이동수업

질의

대학에서 개설되는 이론과목이지만 수업의 특성과 효과를 위하여 15주 수업 중 1~2주 수업을 담당교수 인솔하에 대학외부 시설인 기업을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하는 활동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답사하는 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1. 강의계획서나 수업진도표에 견학/실습이 명시되어 있는 견학/답사 과정을 한주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2. 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이동수업으로 간주되어 교육부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3. 견학/답사도 현장실습수업과 유사하게 교육과정의 일부를 견학이나 답사로 교육이 진행되지만 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운영 형태인데 현장실습으로 포함하여 교육부의 현장실습매뉴얼 기준 등에 따라 현장실습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인가요?



2018-05-15 대학학사제도과

1. 견학·답사로 수업 대체가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14조의2(수업 등)에 따라 수업의 일부를 견학·답사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 수업이 인가받은 교사·교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견학·답사는 수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견학·답사를 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이동수업에 해당하여 교육부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이동수업”은 교수가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밖 일정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동수업의 대상은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 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수업의 일부를 견학·답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동수업의 요건 중 하나인 물리적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방식은 이동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견학·답사도 현장실습의 일부에 해당하여 현장실습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 강의실 수업의 일부가 견학, 답사 등의 방식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현장실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실습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교과와 담당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업(견학, 답사 포함)을 운영하면 됩니다.

14 편입학 모집 자격

질의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4년제 편입학 지원 시 다른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하거나,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3학년 1학기로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4년제 대학교의 4학년 1학기로도 편입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8-11-14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3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4학년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제도 변경사항은 아니나, 매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 내' 일반편입학의 경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입학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질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

2018-05-28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한 서민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고 장학금 재원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의 재원은 일부 국고 지원액을 포함한 대학별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재원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소득 3구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100% 이상을 지급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학별 취약계층 학생 수, 재정 현황 등 장학금 부족으로 소득 6구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4구간~6구간의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 소득 6구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4구간 85%, 5구간 75%, 6구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조정 가능) 이는 장학금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으로 확보하였음에도 취약계층 학생 수 등의 사정으로 장학금 부족 시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교육희망 사다리 복원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관계 대학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각 대학에서 일부학과에 한정하여 편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3-30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동법 시행령 제29조(입학, 편입학 등)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과 편입생 선발시 학과를 지정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17 폐교대학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질의

폐교대학의 각종서류(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2018-03-30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폐쇄(폐지)대학의 학적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쇄(폐지)대학의 졸업생, 교직원 및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학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습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u-haksa.or.kr (폐쇄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의 사후지원을 위한 통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질의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매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18-06-01 대학학사제도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현재 이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같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의 주류 판매를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9 대학 간 이중학적 가능 여부



일반대학(전문대, 4년제, 사이버대 포함)간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 대학간 이중학적 허용여부는 학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법상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하다면 근거가 되는 조항을 알려주시고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중학적을 관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06-28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르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학적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학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학적 관리 등 관련 사항은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계약학과 설치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만 구분된다면 기존에 있는 학과 명과 동일한 학과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석사과정에 일반학과인 AAA학과가 있는데, 학사과정 계약학과 설치시 AAA학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2017-12-19 교육일자리총괄과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계약학과 등의 명칭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계약학과의 명칭을 산업체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⑧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은 계약학과의 특성과 함께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을 학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그 설치 방법과 입학자격 및 학적유지 등에 있어 일반학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계약학과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1 계약학과 편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

질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알게된 계약학과에 대해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학과 3학년 편입학 자격요건 중에서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10개월 이상인 경우에 입학자격요건이 갖춰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고등학교 졸업 후 10개월 이상 해당 산업체 근무한 뒤 휴직한 다음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산업체에 다시 복직이 가능하다면 계약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2년제 졸업 후에 해당 산업체에 다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그 다음해 3학년으로 편입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건가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07 교육일자리총괄과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제1항은 제5호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무재교육이라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상대적으로 입학이 손쉬운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편법적으로 진학하는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본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계약학과 협약 업체에 10개월 근무 후 2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해당 업체에 복직이 가능하다면 편입학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질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치한 대학원의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6조의 학생보호 규정을 학교 또는 실습기관 등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벌칙, 처분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8-04-17 교육일자리총괄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17.3월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적용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규정은 대학원에도 적용됩니다(제3조 개정).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3 계약학과 학위취득

질의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2항에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에 정년퇴직 포함 여부와 만약 정년퇴직도 계약기간 만료에 포함 된다면 학위를 부여할 수 없고 제적처리 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8-07-23 교육일자리총괄과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학과이며, 따라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산업체에 재직해야만 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에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의 원인에 의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

질의

'18년 9월부터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뒤 원하는 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소기업은 포함되는지, 소기업이 포함 된다면 최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2. 3년이라는 기간은 중소기업 1곳만 3년 이상인지 혹은 모든 이직 기간을 합쳐 3년인지 궁금합니다.
3. 3년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대학교 입학까지인지.
4. 등록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5. 대학교를 휴학하고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대학교 복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8-07-23 **교육일자리총괄과**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기업 범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말씀해주신 소기업 재직자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최소 규모 요건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내역 등 재직 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재직 기간이 인정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3년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여러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될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재직한 기간이 해당되며, 대학 입학 후 장학금 신청 전까지의 재직기간은 모두 재직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 ‘수혜학기 당 4개월’ 간 의무 재직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기 중 퇴사 또는 이직이 가능하나,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4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기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 보증보험을(약 4만원, 장학생 부담) 가입해야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등을 거쳐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5. 4)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 선정 후 퇴직 혹은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직 후 복학한다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5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질의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규정해놓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 적용대상에 산업체위탁교육생(고등교육법 제40조 근거하여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불가(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은 현장실습 불가 등

회신

2018-02-06 전문대학정책과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임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 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2. 동법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정하고 있음
3. 그에 따라 산업체 위탁교육생에게 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장실습 시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6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산학협력단에 전출 가능 여부

질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전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바,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국립대 교직원을 분임재무관과 분임지출관으로 임명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8-10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학회계 재원은 발전기금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질의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8-10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 복무

28 대학 교원 휴직

질의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신

2018-08-28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휴직 중에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임용령」 제54조에 따라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 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는 바, 질병 휴직 중인 자가 질병 치료 외에 사업단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9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질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일을 징계처분 기안문서 내에 특정하여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

2018-10-17 **고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 결재일이 아닌 인사발령일을 징계처분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0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질의

국립대 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등 겸직과 관련한 보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0-15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 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이 유튜브, 블로그 등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이 행위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0-22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미 생활로 “유튜브 등에서 개인방송활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은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2항에서 “채용인원”만을 규정하고, 퇴직·소속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자 및 소속 변경된 자 등도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조교 교육공무원 분류 사유**

질의

현재 조교들은 연구나 교육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사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교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7-09 **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정 시 조교는 직무의 성격이 교원의 직무와 동일 연계선상에 있지 않고 교원 등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원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조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정관 또는 학칙, 관련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직원과 달리 교육·연구 및 학사를 담당하는 조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4 휴직 교원 재임용

질의

사립학교 조교수로 근무 중 국가기관 임시 고용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국가기관 계약연장 등으로 휴직기간 연장하였고, 연장된 휴직기간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계약기간 : 2014.9.1.~2018.8.31/휴직기간 2014.9.1.~2018.8.31.) 해당학교에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봉사, 연구점수로 재계약 평가를 받아야 하나 계약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으로 인하여 재계약 평가할 기준이 없으며, 재계약 평가 받을 실적이 없습니다.(학교규정에 휴직에 해당하는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하며, 기준점수도 기간만큼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런 경우 규정에 의거 기준점수가 0점이 되는데 재임용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8-07-16 고등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교수의 임용기간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3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7항에 ① 학생교육, ② 학문연구, ③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계약 평가를 받을 실적이 없는 경우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귀 대학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속 대학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5 대학 교원 파견

질의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국내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대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파견근무에서 정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파견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의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인지(즉 파견근무를 할 예정인 기관에서 무급이면 파견근무가 불가능한지),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이지 않아 무급으로 파견을 간다면 파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7-2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7호의 국내외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동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에서 대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고 있어, 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관에 포함될 것이며,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파견 시 보수 지급 등은 파견기관 간 협의할 사항으로, 파견 시 보수 지급 등 파견에 관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 영상의학 분야의 판독 업무에 대해 원격판독(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판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당수 다른 의료기관에 전속 혹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대학의 전임교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의 원격 판독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2 고등교육정책과

국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타 병원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겸직승인을 받아야합니다.

37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질의

사립대학 재직교원의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정도]에 대한 의견에 기속받는지, 그리고, 징계요구권자가 [임면권자]인지 [관할청]인지에 따라 기속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13 **고등교육정책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법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진상조사를 다하고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한편 징계대상자의 소행,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청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의

고등학교 이하 교원은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저축 연가제가 미적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연가보상비 적용없음)은 저축 연가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30 고등교육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서는 국가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연가저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의 교원도 학생 교육·지도,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년·안식년 제도 운영 등 복무에 특수성이 있으며, 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가저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9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지방의회의원이 국립대학 비전임겸임교원의 직을 겸직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또한, 비전임겸임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포함되는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8-02-19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제5조의2에 의거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임용된 사람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의 겸임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경우 지방 의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립대학 비전임 겸임교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6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아니더라도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전공 학과의 수업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4-19 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에서는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거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립대학의 행정직원이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위촉)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속 대학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이므로 소속 대학의 정관 및 규정을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 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고용휴직 중에 시간강사 위촉 가능여부

질의

국립대학교 교원(전임교원)이 재단법인의 장으로 임명되어 고용휴직하는 경우 이 교원을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나요?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8-06-18 고등교육정책과

공무원 고용휴직제도는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의 직무를 쉬면서 고용휴직 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동 제도는 공직사회 내 국제전문가 육성, 기관 상호 간 이해증진,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법인 장으로 고용휴직 중인 교원은 고용 휴직 본연의 취지·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휴직 중 이더라도 원 소속 기관(대학)의 공무원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대학의 시간강사로 겸직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2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질의

국립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중인 자가 사학연금법과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사학연금을 납부하고 교직원공제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부속병원 간호사도 대학의 교직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2-09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교직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3 사립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절차

질의

사립대학의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임용권자의 결재만으로 의원면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원면직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20 사립대학정책과

직권면직(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아닌 의원면직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 절차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상 의원면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다 62891,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532)

44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가능 여부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임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임이 가능할 경우 해임안은 이사정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대행의 선출 역시 이사정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8-09-19 사립대학정책과

이사장 해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 가능하며, 다만, 해당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인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입제도

45 수능 원서 온라인 접수

질의

졸업생이 수능을 응시할 경우 모교로 방문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20 대입정책과

수능 시험은 매년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약 6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응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출신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으로 접수하도록 하여 수능 대리응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본인 확인, 출신교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원서기재 오류 방지, 수능시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6 2021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질의

2021학년도부터 표준화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체류일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9-18 대입정책과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학생(해외근무자의 자녀)이 해외 근무자의 근무기간동안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할 것과 부모와 같이 체류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1개 학년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로,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 체류하여야 합니다.(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한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 계산) 더하여 출장, 방학 등으로 인하여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는 해외체류로 보지 않으며, 통상 입국일은 해외 체류일로 보나, 출국일은 해외체류일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지원 자격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공통 지원 자격으로 대학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최종 판단권은 해당 대학에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학처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질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후, 주소지를 옮겨도 자격에 충족 되나요?

회신

2018-05-10 대입정책과

농어촌 특별전형(유형I)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①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재학하고 ② 동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8 대입 원서 접수 내역 수정 및 입학전형료 환불

질의

대학 입학원서를 넣을 때 전형 종류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전형료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전형료 환불은 안해주나요?

회신

2018-10-10 대입정책과

수시 원서접수 후 결제 이전에는 대학, 모집단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서접수(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이후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경쟁률, 지원횟수 제한 등에 따른 공정한 전형 운영을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학전형료 반환과 면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서접수 취소는 전형료 반환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9 실기·논술 고사 일정의 중복

질의

두 대학의 논술고사 전형 일정이 겹쳐 한 학교를 지원하면 한 학교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의 실기고사 일정을 조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

회신

2018-09-18 대입정책과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매년 모집시기별 선발일정을 정하며, 각 대학은 이 일정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의 면접·논술·실기고사 등의 일정은 시·도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 기업과 학교의 출근시간, 고등학교 학사 운영, 시험장소 확보 여부, 지원자의 수, 대학별 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많은 대학들이 주말에 운영하고 있어 시험일정이 부득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 대학은 모집요강,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논술, 실기고사 등의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학생 선발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귀하께서는 제안해주신 것처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수시 합격시 정시지원불가

질의

현행 제도상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진 학생의

경우 다른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정시 지원 기회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7-12-27 대입정책과

대입의 수시전형, 정시전형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모집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수시전형 일정이 끝난 이후에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과 기존 정시 모집계획인원을 함께 정시전형에서 모집합니다. 수시전형의 지원은 지원자의 선택으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수시 합격자가 정시에 지원이 가능할 경우 수시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차순위 불합격자에게 합격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진학 방안



고등학교 자퇴생의 경우 검정고시로 대학준비를 하는데 수시전형이 70%에 육박하고, 학생부위주전형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검정고시 대상자들의 대학입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



2018-01-24 대입정책과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모집분야,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각 대학 별로 이루어지는 전형 방법의 세부 사항(수시/정시 비율, 지원자격 등)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19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정원외),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를 지원자격상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 등에서 수시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17.12.28)에 따라 각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지원자격 제한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정고시 관련 대입전형 정보는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및 '대입정보포털(<http://www.adiga.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2 대학 합격과 등록포기 문의

질의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대학에 합격 및 등록포기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등록 마감일에 등록포기하고 총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등록포기를 먼저해야 하는지, 총원 합격 등록하고 그 후에 포기하면 되는지 순서 또는 절차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8-01-24 대입정책과

대학 입학 전이라면 타 대학 총원과 상관없이 등록 포기는 가능 합니다. 다만, 총원 합격 대학의 등록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등록기간 마감 전에 등록포기 후 총원 대학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등록 마감일에 등록 포기하고 총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은 가능하나 타 학생의 합격기회가 사라지므로 총원합격 연락을 받은 경우 등록 마감일 이전 등록포기가 바람직합니다.

53 자기소개서

질의

자기소개서에 수상경력, 논문 등의 기술을 제한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3-14 대입정책과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높은 외부스펙 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수상실적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0점”(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활동(해외 어학연수 등)을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어학성적이나 외부수상 실적이 아닐 경우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내용, 학교장이 허락한 범위 내의 교외 활동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된 내용 등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와 불이익 부여 여부는 대학과 평가자의 재량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04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용 차량 內 이동감지 센서 부착

질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아동 등의 차량에 움직임 감지센서를 장착, 작동 시 차량 외부로 알람 기능을 통해 차량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여 두번 다시는 차량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는 강력하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8-08-02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및 위치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실시간 전송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 추진 중이며, 이외에 통학버스 안전확인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2 미세먼지 재난인정 법안처리

질의

중국발 미세먼지로 콜록거리며 등교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이런 날 야외학습 하지 않도록 자제 요청 드립니다.

회신

2018-11-15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관련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등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및 실내체육 시설 확충지원,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발표(’18.4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 및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동 매뉴얼은 미세먼지 기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실외수업 자제 및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할청은 시도교육감이고, 휴업 및 수업운영 방법 등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부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학교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질의

학교 재난 대피 훈련 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실제 적용되는 것 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신

2017-12-06 학교안전총괄과

우리부와 시도교육청·학교에서는 작년 경주지진이후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학교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도 및 안전교육체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안전의식 및 대응방법이 중요하기에 교사들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의무화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체계적인 학생 안전교육 실시하고자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관련 고시 개정하여 매 학년도 재난대비훈련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서 긴급히 학교휴업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가 필요한 경우 긴급재난문자(CBS)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목표아래 계속해서 선진안전 문화를 개발하고 현장에 전파 및 교육을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학교 및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이동 수단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 강화 요청

질의

요즘 인라인, 킥보드, 전동휠(무면허) 등 이동수단에 대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2018-06-05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할 있도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바 있으며, 학교는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안전 사항은 여가활동 안전 영역의 '탈 것 안전'으로 분류하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을 폭넓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교육에 멈추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안전 연수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대중화된 '스마트 모빌리티(전기 등을 활용한 휴대용 이동 수단)'의 안전한 활용(교육)을 교사 연수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더 필요한 상황 이므로, 학교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 등에 포함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정보

5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질의

1. NEIS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인증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개인) 인증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임에도 불구하고, NEIS에서 해당 인증서 이용을 '제한 및 배제'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12-12 교육정보화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서비스는 학생-학부모 서비스용 특수목적 인증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웹표준 환경적용 및 사용자 PC보안 서비스 교체 작업 과정에서 학생서비스도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 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용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의거, 학생·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나이스 학생서비스의 경우 학생회원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지 않은 점*, 공인인증서 사용 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집**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 학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자 학생용 특수 목적 인증서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 학생회원의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12
- **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입력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주민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1(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6 NEIS 영문 증명서 발급 건의

질의

NEIS 홈에듀 민원,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증명서 발급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정원외관리, 제적증명서(고), 졸업예정증명서를 현재는 국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2018-03-12 교육정보화과

교육관련 제증명 온라인서비스는 홈에듀민원,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있으며,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는 현재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영문성적증명서는 시범운영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중학교 성적증명서는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스템으로 자동화한 영문 발급은 어려움). 기타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해당 영문 증명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NEIS 기본학적 주소란 인권 침해 문제점 개선 요청

질의

NEIS/기본학적/주소란을 보면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아파트 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의 경우 주소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공문서에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빠른 개선바랍니다.

회신

2018-03-15 교육정보화과

NEIS에서 제공되는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는 주소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에 건물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주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NEIS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해당 주소 선택 후 하단의 도로명 주소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설

8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

질의

주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 개방을 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회신

2018-06-05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

질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5항에 따라 폐교(현재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에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교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제3634호)」에 따라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진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2018-01-24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정('82. 12월) 시 이미 기존 설립된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부칙(법률 제3634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시설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질의**

주택건설사업으로 학급수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부지의 증감이 없이, 초등학교 부지 일부에 교실을 증축하려고 할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1항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시행계획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2018-03-12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준공 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에서의 학교시설 건축, 축조, 대수선 등은 별도의 시행계획을 승인받을 필요는 없으며,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건축을 위해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란 학교시설 신설 시 시행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각종학교 건축허가 가능 여부

질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각종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각종학교”가 별도 구분되어 있는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인지,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해야 하는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5-15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12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라 학교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인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2. 위 1)항이 불가하다면 교육청에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회신

2018-08-03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과 관련된 권한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 역시 교육청 기술자문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3 학교 부지 내 어린이집 축조 가능 여부**질의**

신설학교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물 축조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축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9-21 교육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정해져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별도의 어린이집은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2에 의한 복합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14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질의

1. 학교시설 고시선 내 초등학교 부지에 분양이나 임대사업 목적이 아닌 교직원 숙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교직원숙소)로 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학교시설 부지 내에 교직원 숙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2018-11-29 교육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학교시설 고시선 내 설치하는 시설은 학교시설로서 그 중 교직원 숙소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하여 “관사”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승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질의

2018년도 ○○초등학교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에 해당학교에 대하여 수직증축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완료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수직증축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해당건물에 대하여 수직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기 완료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5-29 교육시설과

해당학교를 기존 기준에 따라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후 공사계약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직증축은 신축설계에 준하므로, 「건축구조기준」 또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18)」에 따라 증축부분은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는 증축부분까지 고려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16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질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발행) “3.3.2 재료강도의 결정” (2)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대상 기존건축물(1998년도준공)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13Mpa 일 경우, 이 값으로 선형해석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 보유 성능지수가 1.0이상이고 층간변위 값을 만족하면 지진력에 대한 목표성능을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건축구조기준에 의하면 구조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8Mpa 이상이고,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는 설계기준강도가 21Mpa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에 비하여 위의 평가대상 건축물의 설계기준강도가 13Mpa로서 kbc 기준값에 미달하여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위의 kbc 강도기준에 맞게 개별 부재마다 강도보강조치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21 교육시설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재료강도 기준은 없으나, 해당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13MPa 이고 이를 적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유성능지수가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면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구조용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 강도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 값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료강도 기준에는 과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Chapter 05

평생교육



평생교육

1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는 과정은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신

2018-04-23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기관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양보호사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학원 등의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관리 가능 여부

질의

현행, 「학원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회신

2018-11-20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령」상 법정 장부(현금출납부,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수강생 출석부) 및 서류를 수기, 종이문서 출력 또는 전자적 관리 등 그 비치·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등에서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질의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2018-01-22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1항 및 제14조 제7항에 따라 학원의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가 휴원(소) 또는 폐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 1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상까지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자발적인 휴원(소) 또는 폐원(소)을 유도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17.12.19자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등록(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소)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행하는 직권말소는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폐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학원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7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신고없이 폐원(소) 또는 휴원(소)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현행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고된 거주지 이외의 장소도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

2018-08-13 평생학습정책과

2001.4.7.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3.22일 「학원법」 및 2004.6.5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법」상 ‘개외과외교습’의 장소인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습자 또는 학습자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할청에서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학원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5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질의

교습소는 교습 과목 수에 제한이 있어서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하는지요?

회신

2018-11-30 평생학습정책과

교습소의 제도와 취지는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학원과 차별화하여 198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인 1과목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습의 특성 상 강사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강사 채용을 허용할 경우 1과목 1개소 원칙을 유지할 명분이 없으며, 학원에 비해 시설기준 완화로 학원과의 형평성 논란 우려도 됩니다. 교습소에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을 둘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을 채용함에 있어 애로가 있어,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6 「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질의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2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른 건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주 간에 협정에 의해 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동이 맞닿아 건축되고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형태는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건축물 주소가 다르고 각각 건축물대장이 다르면 다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8-05-02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 시행령의 동일한 건축물 범위와 규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7.4.13. 법제처 해석). 건축물의 주소가 다르고 별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물이라면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맞벽으로 건축되어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학원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학원법」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

질의

「학원법」 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0-12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이 있는 곳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구, 「학교보건법」)에 따른 유해업소가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원인께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 학원법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상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그 복합업종을 판단하여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별도 없어 비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종내용으로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운영하고자하는 업종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학원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그 복합업종 내용이 유해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8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질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회신

2018-11-20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는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체결한 고용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9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

질의

「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8-07-23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변질 될 우려가 있어, 학습권자의 학습권 존중의 목적으로 불법 사례에 대해서 신고처리는 접수하되, 청소년 보호적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질의

미성년자가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7-25 평생학습정책과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독서실 설립·운영 등 법률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영어교습소 명칭

질의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 됩니다.

회신

2018-08-2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 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하고 규정하여 학교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교습소 명칭 사용 시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만으로는 교습소가 학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습소 명칭 사용에 대해 수리 관할청과 협의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질의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9-21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4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직접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어민이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민원인께서 교습을 보조하는 등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본인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대면교습만 허용하고 맘스영어 공부방의 경우에는 등록 교습과정에 1:1 원어민 화상 교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청에 등록하지도 않은 무등록 및 무자격 강사에게 학생들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원법령」 및 「시·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질의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 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 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 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

2018-09-19 평생학습정책과

1.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고등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상 평생교육 진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제1조).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은 그 취지와 규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하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4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질의

동일인(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두 학원 실적을 서로 공유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 광고행위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그와 같은 부당 광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법적책임은 무엇이며, 과거에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16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광고를 한 경우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학원이 B학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학원법 위반사항을 판단하여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질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12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1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16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질의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06 평생학습정책과

현재 학점은행제에서 법령 및 규정상 대학학적보유에 따라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대학의 학적보유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재학, 휴학 포함)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대학(교) 재적(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을 인정 받을 수 없고 대학 제적(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
- 대학(교)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교)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학(교) 졸업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도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사학위 과정 중 사이버대학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칙 등에 편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니 학칙을 확인 후 편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17 특성화고 취업시기

질의

특성화고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학기 내내 회사에서 인턴제도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8-06-20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산업체 현장실습은 3학년 수업일수 1/3 범위(약 63일) 내에서 가능하며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현장실습 참여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 3학년 수업일수 2/3 이상 이수 후(일반적으로 10월 초 정도) 조기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업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 부장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8 현장실습 표준협약체결서 문구 수정 건의

질의

현장실습표준협약체결서의 제13조를 사업주 보상이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회신

2018-09-12 중등직업교육정책과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제2018-69, '18.09.11.)’ 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생의 산재보상을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를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현장실습생이 받는 수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0원’으로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보험료는 학생이 실제 수령하는 수당에 따라 납입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해당 내용은 현행대로 준수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질의

1.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 대학진학이 제한되고 있는지요?
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실제로 제한되고 있다면 어떠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요?

회신

2018-01-11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적으로 인력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입학생 모집단계부터 취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 또한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실험·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의 우선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과 함께 개교 후에는 원활한 학교운동을 위한 운영지원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마이스터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저성장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경우 대학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hapter 06

기타



1 외국인학교 근거법령

질의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8-10-11 교육국제화담당관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제67조의 특례조항 제외)의 적용도 받습니다.

2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질의

제주국제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5-14 교육국제화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6항에 따르면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동법 제21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질의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파견교사 선발 공고관련, 간호 분야 교사는 선발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0-09 교육국제화담당관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는 국가별로 전문화된 분야의 교사 교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상대국의 서로 다른 교육 정책과 환경에 대한 경험을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류 분야는 직업교육 및 특수 교육 분야로서, 간호 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 사업인만큼, 교류 분야는 상대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양국의 협의 후 결정된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1-22 고등교육정책과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소관)」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하는 학교와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질의

1.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임차인이 어떤 업종의 영업을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2. 대학병원이 소유하는 건물을 약국개설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나요?
3. 대학병원이 소유하는 건물을 보건의료와 무관한 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나요?
4.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법인에 해당되나요?
5.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제한을 받는데, 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근거해서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제한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회신

2017-12-01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8조 및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이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6 분교 및 캠퍼스 설립 절차 등

질의

대학의 분교와 제2캠퍼스, 이원화캠퍼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에 제2캠퍼스 또는 이원화캠퍼스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회신

2018-10-29 사립대학정책과

대학의 분교 설립은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며, 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학교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대학의 중요사항 중 하나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위치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분교와 같은 대학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대학의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제2캠퍼스, 이원화 캠퍼스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위치변경인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학의 분교 설립 또는 위치이전을 위해서는 대학측에서 교육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또는 반려)등을 하게 됩니다.

7 학교법인 분리후 신규 학교법인 신설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 신설·운영 관련하여, 아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연법인에서 소유한 기본재산을 신설법인에 기부출연시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여부(처분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처분허가를 관할청에서 신설법인에 출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지 여부)
2. 관할청에서 신설법인 설립허가 가능 여부

회신

2018-11-16 사립대학정책과

1.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른 증여 관련 신청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한 이후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확정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2. 법인의 설립은 관할청의 허가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정식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계법령 등에 따라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설립(학교법인설립)에 대한 안내서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moe.go.kr → 정책정보공표 → 대학(원)교육 “대학설립을 위한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안내”

8 전국 사립학교 현황자료 요청**질의**

전국 사립초등학교 총 76개 시도별 현황과 전국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수는 전체 중·고등학교 중 각각 몇 %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12-14 교육통계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 초,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등에 관한 교육통계 현황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통해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안내(PC 접속)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 접속 > 상단탭 : 알림·서비스 > 좌측탭 : 자료실 > 정보 검색
- 2) 모바일 앱을 통한 활용 안내(스마트폰, 태블릿PC 등) - 앱 마켓 > 검색(키워드 :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서비스 앱 다운(한국교육개발원) > 앱 실행 > 중앙탭 : 자료실 > 정보 검색

9 EPIK 우수원어민교사의 기준 및 선발

질의

EPIK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선발 기준(모집기간, 자격, 지역별 선발순서, 선발 예정인원 등) 문의

회신

2018-08-07 국제교류협력부

1. 질의하신 EPIK의 우수한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기준 관련입니다. 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초·중등학교에 우수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영어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EPIK 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요구수준에 맞는 우수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선발하고자 1차 지원서 검토(학력, 경력, 자기소개서, 학습지도안, 자기 평가서 등 포함)를 통해 대학 이상을 졸업한 영어원어민으로서 영어 글쓰기 능력, 교육 철학, 문화수용력 및 이해도 등을 심사하고 지원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EPIK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원 자격인 학사학위 이상과 영어지도자자격증(TESOL 등)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지원서의 자기소개서 및 영어 수업 지도안 작성 등에서 대학이상을 졸업한 영어원어민에게 기대되는 정도의 영어 사용 능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수한 영어원어민으로 선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인터뷰심사를 통해 대학이상을 졸업한 영어원어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영어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의 태도 및 인성 등 자질을 검증합니다. 영어 모국어 사용 국가 출신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질문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수한 원어민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후 인터뷰 합격자에 대하여 최종 서류 검증 절차로써 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 성적표, 추천서 원본 등 최종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거짓이나 문서 위조 등이 발견되면 추후 EPIK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EPIK프로그램은 우수한 영어원어민을 선발 배치하여 내국인 영어 교사와 함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과 문화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각적인 검증 방법으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을 선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EPIK 모집기간 관련 답변입니다. 2019년 상반기 모집은 '18년 8월 1일부터이며, 2019년 상반기 수요인원을 모두 선발하면 모집을 마감합니다. 수요인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모집기간은 8월부터 12월 정도가 됩니다.
3. 지역별 선발 순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별로 선발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 수요와 지원자의 선호지역을 고려하여 최종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므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배치가 먼저 완료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4. 선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원어민 선발 절차와 자격에 대한 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 시 교육 경험(교육경력소유)자에게 가산점 등 특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선발 과정에서 교육 경력 여부에 대한 특혜나 가산점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EPIK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대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는 EPIK 등급 결정에 반영되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2019년 상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요에 관한 안내입니다. 2019년 상반기 선발 인원은 수요조사 실시 중으로, 현재 선발 수요 예정인원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요건

질의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 요건 문의

회신

2018-03-12 교육국제화담당관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이하 표준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유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안정적인 수학과 정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능력 수준자의 선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어능력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언어과정 입학생)의 경우는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은 한국어능력 기준이 아닌 영어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과정을 고려하여 해당대학 외국인학생 입학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질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신2018-06-01 **교육국제화담당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규정 제5조)하되,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하여 초중학생의 부양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국제화의 진전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도 동 규정에 의한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되,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해외 취득 학위의 국내 대학 인정 여부**질의**

주정부교육국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에서 학위 인증 가능여부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야(즉 CHEA산하 인증기관인증) 국내 대학에서 학위 인증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위 학교의 학부과정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의 대학원 진학하고자 할 경우 국내대학의 석사입학 가능여부, 주정부승인 대학의 석사과정 취득 후 국내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쭙어 봅니다.

회신2018-10-25 **교육국제화담당관**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인정은 개별 대학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학위정보센터(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에서 국내의 고등교육정보(학위·학사제도, 교육과정, 인증체계 등) 제공하고 있으니 동 기관 홈페이지 (<http://kari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외교육기관 파견교사 수당

질의

재외교육기관에 근무중인 공무원(파견 및 고용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2018-10-12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 수당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파견교사는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보수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경우 2015년 6월 파견계획 수립 시에 시도교육청과 국내 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 등), 국외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한국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공무원이 가족을 동반하게 되면 관련 제수당은 한국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학교 현지 사정 등에 따라 학교 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무조건은 선발 공고 시에 미리 안내가 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질의

국비유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2018-09-14 글로벌인재양성부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비유학생 선발 및 파견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등의 선발 시험 공고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교육원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공고문과 제출서류를 첨부해 드립니다.

15**정부초청외국인 전문학사 과정 후 편입에 따른 장학금 지급여부 등****질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으로 A전문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졸업 후 B대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장학금은 편입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국비 및 민간 장학금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2017-12-04 글로벌인재양성부

정부초청외국인 전문학사(2년제) 과정은 전문 직업분야로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정부초청외국인 학사(4년제) 과정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과정 종료 후 학사 과정으로의 장학 신청은 사업 취지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4년제) 과정 대학으로 편입한 후,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우수 자비유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등 세부내용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Study in Korea’ 홈페이지의 ‘Scholarships > Government Scholarsh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우수 자비유학생 장학금]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지원내용 : 생활비 (월 50만원)
- 장학금 수혜기간 : 10개월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학년 기준 국내 대학 (전문대학 포함) 학부 2학년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비유학생
 - ※ 학점취득 없이 등록만 한 자,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 편입생의 경우, 1년(2학기) 이상 국내대학에서 재학한 경우에 지원 가능
 - ※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유자
 - ※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 수혜자(생활비 지원, 월 50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 ② 전체 재학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 ③ 직전 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학 및 민간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타 장학제도의 경우에는 Study in Korea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udyinkorea.go.kr > Scholarships > Universities' Scholarships / Other Scholarships)

16 연구윤리 검증 시효

질의

2011년 2월 출판된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1-12 학술진흥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5년 규정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6.2.일 개정 시에 삭제되어 현재까지 시효규정이 없는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삭제)

이에,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시기에 관계 없이 과거 모든 연구물이 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이 되며, 관련사항은 「연구

윤리 실무 매뉴얼」(2014.1, 한국연구재단)에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15.11)」에 적시된 소급적용*에 대한 사항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물 발표 당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시효규정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17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등재후보지가 되기 위한 세부 기준

질의

일반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이 되기 위한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회신

2018-10-29 학술진흥과

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이 되기 위한 신청자격은 유형 1, 2 중 신청 학회에서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유형 1은 직전 3년간 매년 최소 1회 이상 학술지 발간실적이 필요하며, 유형 2는 직전 2년간 매년 최소 2회 이상 학술지 발간실적이 필요합니다.)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신규 평가에서 신청자격 항목을 모두 통과한 학술지가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등재후보지로 선정 후 2년 뒤 계속평가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등재학술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학회활동이나 논문편수와 관련한 정량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가위원들께서 정성평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학문분야의 다른 학술지들과의 비교에서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평가 항목들은 <https://www.kci.go.kr>(한국학술지인용 색인) 정보마당- 공지사항 27번(붙임1, 붙임5) '2018년도 학술지평가 신규평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 내 자료 확인 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학술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학술진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 대학 내 학교기업 설립

질의

대학내 학교기업 설립 시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립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는지, 산학협력단장이 대표자인 경우, 학교기업의 이사진 구성에 관한 규정이 궁금하며, 다수의 학교기업인 경우 학교기업마다 대표자 및 이사진을 다르게 구성 가능합니까?

또한 학교기업을 통해 교내 커피숍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 건물용도 변경 등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8-03-22 교육일자리총괄과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를 적용받는 산학협력단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의 이사진(대표자 포함) 구성에 관한 내용은 각 학교기업별로 학교기업 설립에 관한 운영 규정에 기재하여 학칙으로 제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내 커피숍 설치·운영 관련 건물용도 변경 관련하여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관련 건물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 소재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교육사업 가능 여부

질의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7-26 산학협력정책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에 대한 발생 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 시설물의 활용 및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산학협력단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질의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나요?

회신

2018-10-05 산학협력정책과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산학협력법 해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고 규정(산학협력법 제25조 제5호)하고 있는바, 영리법인과 달리 지분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 법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21 한국사 능력 시험

질의

한국사 능력시험이 현재 4회 실시되고 있는데 연 6회로 확대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8-09-12 기획협력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응시자들의 지속적인 시험 횟수 요구를 반영하여 2007년 연 2회, 2010년 연 3회, 2012년 연 4회로 시험 횟수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 회차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험 운영 체제에서는 연 4회 이상의 시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시험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어학시험 또는 자격증 시험 등과 달리 매회차별로 새로운 출제위원을 섭외하여 3주간 합숙을 통해 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직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합숙에 따른 수업 지장 등의 문제로 학기 중 여러 차례에 걸친 섭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연 6회 시험 실시는 현재 우리 위원회의 여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후 급수체계의 개편, 시험 운영 인력 보강 등 시험 횟수 확대를 위한 여러 여건이 충족된다면,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9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 재직한 기간은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 또는 훈령 등을 알고 싶고, 해당 조항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2018-03-07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9항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 일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교육청 인사규칙의 별표 상당계급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관장사무로 우리 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기에, 이와 관련하여 인사규칙 별표 상당계급표에 교원경력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3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질의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04-12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특별승진임용은 2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을 제외하고 달리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귀 교육청 직제상 정원이 없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별표1]에 따라 지방부이사관의 지방이사관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질의

임용 전 3개월 미만의 사무보조업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회신

2018-05-08 학교혁신정책과

귀하의 경력은 사무보조업무로 이는 같은 법 별표1-2. 유사경력 나-1의2)로 이해되며, 해당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대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력이 단절 없이 3월 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력간 단절이 있다면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무원의 호봉 확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호봉확정심의위원회에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5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질의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이 근속승진 심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08-06 학교혁신정책과

2013. 12. 12. 이전 전환자의 근속승진기간은 전환 당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됩니다.

26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질의

별거중인 남편과 시부모 모두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와 별거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하는지요?

회신

2018-09-28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후단은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는 배우자이며, 제2호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규정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는 부양가족 신고 시 기본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별거사유는 귀하께서 별도 입증하셔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27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질의

일선 학교에서 아동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아침(07시)과 저녁(17시40분) 매일 초과근무를 꼭 해야 하는데, 초과근무와 육아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0-01 학교혁신정책과

시간외근무수당은 ① 실제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②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지각, 외출, 반일연가 등의 복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초과근무도 인정하므로, 육아시간 사용자도 별도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321p), 정액분 산정 시에도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325p).

28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질의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석에 대하여 서면출석이 가능하도록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사회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 조항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0-04 학교혁신정책과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에 이사회출석과 관련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영상회의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임원의 임무) 제3항에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바, 서면출석을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대학 비전임교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신

2018-04-16 교육협력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에게 사학연금법 적용을 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임명 보고된 경우에만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hapter 07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帯)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와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 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된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 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 4. 26., 2017. 7. 26.>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0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98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로 한다.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03호, 2016. 4. 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부터 <388>까지 생략.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63호, 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일 : 2018년 12월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1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